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083 발의연월일: 2022. 4. 5.

발 의 자:유기홍·권인숙·김두관

박찬대 · 서동용 · 양정숙

오영환 • 이수진(비) • 이학영

임호선 · 조승래 · 최기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,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 기됨.

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 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의 자격과 임명) ① ~	제8조(위원의 자격과 임명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
	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
	그 직무를 수행한다.